

2025-10-16

(25-6656)

페이지: 1/3

무역기술장벽위원회

원문: 영어

통보

본 통보문은 10.6 조항에 따라 회람한다.

1. **통보국가:** 뉴질랜드

해당되는 경우, 관련 지방정부의 명령(제 3.2 조 및 제 7.2 조):

2. **담당기관:**

에너지효율보존기관

사서함: 388

Wellington, New Zealand

전화: +64 4 470 2200

이메일: star@eeca.govt.nz

웹사이트: <http://www.eeca.govt.nz>

3. **근거 조항 제 2.9.2 조 [X], 제 2.10.1 조 [], 제 5.6.2 조 [], 제 5.7.1 조 [], 제 3.2 조 [], 제 7.2 조 [], 기타:**

4. **해당 제품(HS 코드 또는 국가 관세 분류 번호. 해당되는 경우 ICS 번호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 HS 8516.10: 전기식의 즉시식 · 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HS 8418.61.00: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함)

HS 8415.81.00: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함)

HS 8418.99: 냉장 또는 냉동 장비 및 열펌트 등의 부분품

5. **통보 문서의 세부 사항(제목, 페이지 수, 접근 방법):** 협의를 위한 규제 영향 평가서: 열펌프 물 가열기(HPWH)에 대한 에너지 효율 정책 옵션 (2025년 9월, 110페이지)

요청 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당국의 통보 문서 및/또는 연락처 링크:

<https://www.eeca.govt.nz/assets/EECA-Resources/Consultation-Papers/Heat-pump-water-heaters-consultation.pdf>

6. **내용:** 통보된 협의 문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옵션을 제시한다.

1. 현재 상태 유지 옵션은 현재 상황에 대한 변경을 포함하지 않는다. 즉,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을 규정하지 않거나 HPWH 의 운영 및 성능에 대한 정보의 자발적 또는 의무적 제공 요구사항을 시행하지 않는다.
2. 호주의 소규모 기술 인증서에 대한 현행 최소 요구사항(3 구역 에너지 절약의 60%에 해당)과 자발적 정보 제공에 상응하는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을 개발한다.
3. (옵션 2에 따른) MEPS 및 의무적 정보 제공은 열펌프 물 가열기(HPWH) 공급업체가 의무적으로 제품 라벨을 부착하거나 공급업체가 해당 기기에 대해 제공하는 모든 제품 마케팅에 성능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제품 성능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정책 옵션 외에도, 협의를 위한 규제 영향 평가서(CRIS)는 옵션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방법, 표준 및 표시해야 할 정보 등과 같은 기술적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현 단계에서 뉴질랜드가 선호하는 옵션은 옵션 3으로, 이 옵션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배출량 감축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과 의무적인 정보 제공을 결합한다.

7. **목적 및 근거(해당되는 경우 긴급한 문제의 성격 포함):** HPWH 공급(판매, 임대, 대여 또는 할부 구매)을 위해 제안된 정책 옵션은 뉴질랜드 소비자들이 가정용 음용 온수 공급에 대한 에너지 효율적인 대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뉴질랜드에서 온수는 (난방 다음으로) 가정용 에너지 사용량이 두 번째로 많으며, 약 3 분의 1을 차지한다.

열펌프 물 가열기는 기존 물 가열기(전기 저장식 물 가열기 및 가스식 물 가열기)에 비해 상당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제공함으로써 온수에 사용되는 가정용 에너지 사용량을 50% 이상 크게 줄여 가정용 에너지 사용량을 17% 절감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이 기술의 실질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HPWH로 전환하면 기존 전기식 또는 가스식 시스템에 비해 장기적인 에너지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설치업체도 소비자에게 HPWH로의 전환을 권장하기 위해 HPWH의 성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현재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비교 가능하며 검증된 정보가 부족하여 소비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물 가열기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HPWH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이 제안은 장비 에너지 효율(E3) 프로그램에 따른 트랜스-태즈먼 해협 이니셔티브를 일환이다. 뉴질랜드 및 호주는 양국 시장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제안된 조치는 "에너지 효율 및 더욱 스마트한 전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 2 차 배출량 감축 계획에 따른 뉴질랜드 정부의 주요 에너지 조치 및 정책에 기여하며, 2050년 순배출 제로를 비롯한 2002년 기후변화대응법에 따른 배출량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두 배로 높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뉴질랜드의 COP28 공약에도 부합한다.; 환경 보호;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8. 관련 문서:

협의를 위한 규제 영향 평가서: 열펌프 물 가열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정책 옵션(2025년 9월, 110페이지)은 [협의 – 열펌프 물 가열기 | EECA](#)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02년 에너지 효율 (에너지 사용 제품) 규정(이하 규정)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legislation.govt.nz/regulation/public/2002/0009/latest/DLM108730.html>

표준은 뉴질랜드 표준청(<https://www.standards.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채택 예정일: 제안된 정책 옵션(진행될 경우)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뉴질랜드 규정에 통합될 예정이다.

시행 예정일: 제안된 정책 옵션(진행될 경우)은 2028년 1월 1일 이후 뉴질랜드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10. 의견 제공

의견 마감일: 2025-12-15

통보일로부터 60 일 [X]

해당 통보와 관련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뉴질랜드 TBT 질의처

기업혁신고용부

wto@standards.co.nz

www.mbie.govt.nz